

치과 보험 청구 - PART I. 술식별 산정 -

외과			
	술식	청구 상병코드	설명
발치	발치 (6,410원/치아)	상아질우식증(K02.1) 백악질우식증(K02.2)	
	난발치 (13,890원/치아)	하악대구치의 매복(제3대구치, K01.173)	치근만곡 또는 골유착으로 단순발치가 어려운 경우
	단순매복 (22,890원/치아)	하악대구치의 매복(상세불명, K01.179)	치은하방 매복, FLAP OPEN시
	복잡매복 (37,860원/치아)	과잉매복치(K01.18)	치은하방 매복, FLAP OPEN시 + 치아분리술
	완전매복 (49,860원/치아)	상세불명의 매복치(K01.19)	치관 2/3이상 치조골하방 매복 + 치아분리술
	유치발치 (2,230원/치아)	잔존유치(K00.63)	
★ ex) Case 1 : #8 distal이 걸려 lux. 불가, odontomy후 발치 → 복잡매복(K01.173) or 난발치 청구가능 ★ 치아분리술 시 : surgical bur(차팅), BURR/SAW 절삭기류 추가			

보존 & 근관치료			
	술식	청구 상병코드	설명
근관치료	치수절단 (PULPOTOMY) (7,870원/치아)	상아질우식증(K02.1) 치수변성(K04.2 치수석회화 등)	유치와 발수가 힘든 경우의 영구치에만 적용 Tomy후 core filling(+/-Cr.)으로 충결시만 인정. ★ Endo 진행시 tomy는 '보통치치'로만 청구가능
	발수(PE)&근관와동형성 (AO) (PULPECTOMY)		C/I 동시 청구 불가. C/E 동시 청구 가능. 발수 3,390원 + 근관와동형성 3,720원 / 근관
	근관세척/근관확대/ 근관성형 (CI/CE/CS)	가역적 치수염(K04.00) 비가역적 치수염(K04.01) 치수괴사(K04.1) 치수변성(K04.2)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K04.4) 만성 근단치주염(K04.5) 동일 있는 근단주위농양(K04.6) 동일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CI : 5회 까지 가능. (1,390원/근관) CE : 2회 까지 가능. (2,480원/근관) 유치 경우 - 감염근관/후속영구치 없을시 endo때 영구치 교환시기 많이 남았을 때 만 CE 청구가능 CS : CE와 함께 청구시 1회 가능. (2,610원/근관) / 유치는 청구불가. CI는 PE와 CF와 함께 청구 불가. NiTi 청구 가능(12,000원/치아)
	근관당 계산		근관당 1회만 인정.
	근관장 측정(WLD) (1,990원/근관당)		측방 및 수직가압충전. ★ 방사선사진촬영 없으면 단순근충으로 삭감됨.
	근관 충전(CF) (6,410원/근관)		CI나 CF만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취인정.
	endo시 마취		영구치,유치 모두 가능 (영구치 - 23,790원 / 유치 - 15,800원) AO+PE+CI+WLD+CE+CS+CF 수복물제거,방사선사진 별도,NiTi 청구가능
	당일발수근충 (1 visit endo)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개방 등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급성치수염, 급성근단성치주염, 급성치근단농양 등의 상태에서 급성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수강 개방시 산정. 발수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응급근관치치 (4,660원)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K04.4) 동일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약당 계산(당일에 타부위 인정안됨. 1일 1회인정.) ★ Tomy+depulpin(보통치치) 경우 불인정
	러버댐 (1,960원/약당)		보철물제거(치아당) + GP제거(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750원/근관당) +/- Post제거(10,320원/근관당) 1개월이전 : 재진+충전물제거+근치50%+재료100% 1개월이후 : 초진+충전물제거+근치100%+재료100%
보존	재근관치료 (Re-endo)		본격적인 치료 전에 행하는 간단한 처치로, 기본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① Endo : Tomy + F/C or depulpin, FC change ② 보존 : ZOE 로 임시충전만 시행한 경우, 간단한 치아삭제시(polishing) ③ 외과 : 발치 도중 중단(치수절단만 시행) 하루에 1치당 1회만 인정
	보통치치 (880원/치아)	비가역성 치수염(K04.01)	우식부위를 제거하고 임시충전을 하는 것 충전 당일 시행된 것은 산정불가 / 비급여 치료 이전에 시행된 것은 청구 불가 (재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 와동형성 청구 불가 / 재료비(cavition 가능) 산정 없음 흔히 충치 등을 제거하고 ZOE나 caviton을 충전한 경우에 해당(단, gold inlay prep후에는 해당 X)
	치아진정치치 (1,670원/치아)	상아질 우식증(K02.1)	Dycal 도포를 시행한 경우(재료비 포함/ Dycal과 함께 ZOE등의 임시수복물 충전을 한 경우에만 가능) 충전당일 시행된 경우,비급여 치료 이전에 시행된 것 청구 불가. ★ Dycal을 도포하는 경우 ZOE를 같이 충전하게 되는데 치아진정치치 보다는 치수복조의 청구액이 조금 더 많으므로 치수복조로만 청구
	치수복조 (pulp capping) (20,690원/치아)	상아질 우식증(K02.1)	충치제거+와동형성+충전까지 완료하는 경우(와동형성비용포함) 비급여재료만 인정(아말감, 미라클, self GL, Ketac-molar, self curing Composit Resin) 충치를 제거하고 보험재료를 충전하는 경우 or 치경부마모증F
	즉일충전치치 (7,510원/치아)		이전에 치아진정치치,P/Tomy, RCT등이 완료된 이후의 충전 "즉치"와 동일한 재료만 가능.
	충전(filling)		충전을 시행하는 날에만 청구 가능 즉일충전치료 = 즉일충전치치료 + 충전료 + 재료대 +/- 마취료 충전(일반) = 와동형성료 + 충전료 + 재료대 +/- 마취료 (이전에 치아진정치치료등이 진행되어 있어야)
	와동형성(cavity prep)		아말감은 다음날부터 가능, 다른 보험급여재료는 당일도 가능. 과거에 시행된 것도 가능.(보험급여재료만) 전치부에서 core(급여재료)충전 후 마무리 되는 경우에는 청구가능
	충전물 연마(polishing) (590원/치아)		

	수복물제거		간단(1,040원/치아): 아말감, GI, RF, SS-Cr 복합(4,420원/치아) : G/In-onlay, Cr, Br bridge의 pontic 은 개수에 무관하게 1개 로 취급 기존의 수복물(급여/비급여 무관)을 제거하고 비급여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
	지각과민처치 (1,100원/치아)	과민성 상아질(K03.80)	불소 등의 약물도포, 또는 이온도입법 사용시 1 치당 청구. 하루에 6치아/1인 까지 가능. 1 치아당 총 2~3회 까지 가능 보철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청구불가. 치주치료시 일률적으로 적용시 삭감
보존	보철물 재부착 (1,670원/치아)		타의원 보철물 또는 오래(기존 없음)된 보철물의 탈락시 지대치 개수로만 청구가능. 타원에서 시행된 임플란트보철물의 재부착도 포함됨. 임플란트 보철물도 6개월이상 경과 된 후 탈락시 청구 가능.

진찰료 & 기본진료			
	술식	청구 상병코드	설명
기본진료	초진 환자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초진료 : 치과의원(11,680 원), 치과병원(12,560 원) 치과의원 야간진료 초진료(14,880 원)
	재진 환자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고 있는 환자. 재진료 : 치과의원(7,740 원), 병원(8,630 원) 치과의원 야간진료 재진료(9,760 원) a.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 되지 않은 한 재진. b.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90일(3M)이내 내원시 재진으로 간주 c.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재진료를 청구 할 수 없다. d.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는 초·재진료를 청구 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날 이후 내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재진 청구 가능.) e. 단 공단검진이라도 6개월, 3세 영유아검진은 초·재진료의 50% 청구 가능하다 f. 학교 구강검진은 당일 진료시에 초·재진료 청구가 가능하다. (구강검진표 이외의 차트를 작성하고 방사선 촬영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청구 가능.) 우식증·치수염·치주질환은 초진시 진단되었어야 하므로 부위와 진단명이 달라져도 재진으로 취급한다. 다른 상병(충치, 치주염 등)으로 30일 이내 진찰을 받아도 : 재진 동일 상병명에 대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하는 경우 : 재진 정기검진(4개월이상)인 경우에도 이전에 치료 했던 부위에 대한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 : 재진 541을 위해 6, 12개월이상 경과 후 예약되는 경우에도 : 재진
	구환 초진 환자		전에 왔던 환자이지만 초진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3 개월 이상, 정기검진이 아닌 다른 주스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새로운 상병명 적용이 가능할 때 a.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후에 재내원한 경우(2차우식, 치수염 등) b. 치주질환의 경우 치료종결 후 90일 이후에 내원하는 경우. 스케일링이나 치주수술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새로 인정됨. c. 파절이나 골절, TMD 일때는 30일 이내도 가능. d. 정기검진(90일 이상)인 경우에 이전과 다른 부위에 다른 처치가 진행된 경우
			★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야 하는 경우. a. 진찰 및 상담만 시행한 경우 b. 치은염이나 사랑니 dressing 또는 구강연조직 질환의 간단한 처치 c. 구강건조증의 처치, 구내염에 대해 오라메디 등 도포, 발치전 dressing d. 치수병은검사 시행한 경우. 처방전만 발행한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방문하여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 받아도 초진 또는 재진료를 청구가능. ★ 비급여 행위시 진찰료 인정 범위 우식증 등의 치료를 위한 과정은 요양급여의 대상이며 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의 진찰료는 비급여임. 즉, 치과보철이나 임플란트를 위한 전처치과정(우식치료 및 근관치료)은 요양급여대상이나 직접비용(행위, 약제, 기공료 및 재료비 등)과 임플란트 시술전에 시행되는 골이식술 등의 비용은 비급여 대상임
방사선진료	약재 및 재료대		별도 산정 (표준촬영 : 필름 312원, 디지털 90원, 파노라마 필름 1180원, 디지털 90원)
	영상진단료		촬영료(70%)에 판독료(30%)가 포함
	Panorama		인정 기준 소아 : 해당치아의 맹출이 평균연령을 초과한 경우. 성인 : PA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 a. 매복치아(사랑니포함), 치주염환자(1/6약 x 3군데 이상) b. 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원인치아(초기우식제외) c. 외상환자. 개구제한 환자 등 구내촬영이 힘든 경우. d. 타원의 PA, panex 판독료 청구 불가.(CT는 인정) / Implant진단목적 청구불가.
	Cone beam CT		판독지를 따로 작성 후 보관. a. 근관 치료 후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b. 치근파절이나 비정상적인 근관형태로 재근관치료가 요하는 경우. c. 완전매복치치나 치근단절제술이 요하는 치아가 신경이나 상악동과 가까운 경우. d. 3 치관이상의 낭종

치근	★ PA 보다는 Bite Wing이나 교합면방사선이 더 비싸다 ★ 근관치료 중 PA는 5장까지 가능 : 치근이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2장 이상 찍고 내역 설명 후 청구 가능. (2매이상은 1/2 만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th data-kind="end"></th><th>비율(원)</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x-ray</td><td>PA</td><td>2,820/매</td><td></td></tr> <tr> <td data-kind="end"></td><td>Bite-wing</td><td>3,170/매</td><td></td></tr> <tr> <td data-kind="end"></td><td>Panorex</td><td>일반</td><td>9,320/매</td></tr> <tr> <td data-kind="end"></td><td data-kind="end"></td><td>TOMO</td><td>10,280/매</td></tr> <tr> <td data-kind="end"></td><td>ConeBeam CT</td><td>일반</td><td>36,990/회</td></tr> <tr> <td></td><td></td><td>3D</td><td>48,080/회</td></tr> <tr> <td></td><td></td><td></td><td>완전매복+신경 3차원이상 cyst</td></tr> </tbody> </table>	항 목		비율(원)	비 고	x-ray	PA	2,820/매			Bite-wing	3,170/매			Panorex	일반	9,320/매			TOMO	10,280/매		ConeBeam CT	일반	36,990/회			3D	48,080/회				완전매복+신경 3차원이상 cyst		
항 목		비율(원)	비 고																																
x-ray	PA	2,820/매																																	
	Bite-wing	3,170/매																																	
	Panorex	일반	9,320/매																																
		TOMO	10,280/매																																
	ConeBeam CT	일반	36,990/회																																
		3D	48,080/회																																
			완전매복+신경 3차원이상 cyst																																
국소마취	<table border="1"> <thead> <tr> <th>도포마취</th><th></th><th>인정되지 않음</th></tr> <tr> <th>국소마취</th><th></th><th></th></tr> </thead> <tbody> <tr> <td>전달마취</td><td></td><td> 영구치의 대구치 치료시에는 전달마취 인정 전치부도 수술인 경우에는 비구개 전달마취를 인정(과잉치나 낭종제거술/Apico 등) 유치도 수술인 경우 전달 마취시행 가능(구치부 난발치 이상) 전달마취는 1/2약당 청구 가능.(상하좌우) 전달마취부위에 추가된 침윤마취는 인정 되지 못하나 반대편 (하악좌측 전달마취시 우측전치부는 침윤마취 인정.) </td></tr> </tbody> </table> ★ 마취료에는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포함되었으나 마취제는 따로 청구 ★ 18~09시에 시행된 마취료에 대해서는 50%를 가산 ★ 소구치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공전달마취는 삭감 또는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하지조전달마취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가능성이 높음. ★ 사용된 마취제는 실제 사용한 개수만큼 기록하고 청구하면 되지만 너무 많은 경우 '유를 기록하여도 삭감될 수 있음.	도포마취		인정되지 않음	국소마취			전달마취		영구치의 대구치 치료시에는 전달마취 인정 전치부도 수술인 경우에는 비구개 전달마취를 인정(과잉치나 낭종제거술/Apico 등) 유치도 수술인 경우 전달 마취시행 가능(구치부 난발치 이상) 전달마취는 1/2약당 청구 가능.(상하좌우) 전달마취부위에 추가된 침윤마취는 인정 되지 못하나 반대편 (하악좌측 전달마취시 우측전치부는 침윤마취 인정.)																									
도포마취		인정되지 않음																																	
국소마취																																			
전달마취		영구치의 대구치 치료시에는 전달마취 인정 전치부도 수술인 경우에는 비구개 전달마취를 인정(과잉치나 낭종제거술/Apico 등) 유치도 수술인 경우 전달 마취시행 가능(구치부 난발치 이상) 전달마취는 1/2약당 청구 가능.(상하좌우) 전달마취부위에 추가된 침윤마취는 인정 되지 못하나 반대편 (하악좌측 전달마취시 우측전치부는 침윤마취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th data-kind="end"></th><th>비율(원)</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마취</td><td>침윤</td><td>1,120/canal</td><td>하악전치부의 침윤만 인정</td></tr> <tr> <td data-kind="end"></td><td>이공</td><td>2,920</td><td>하악소구치에 한함</td></tr> <tr> <td data-kind="end"></td><td>후상치조</td><td>2,930</td><td>유치에서도 수술에서는 인정됨</td></tr> <tr> <td data-kind="end"></td><td>비구개</td><td>3,020</td><td>Endo/치주수술/외과 수술시 인정</td></tr> <tr> <td data-kind="end"></td><td>하치조</td><td>3,800</td><td>유치에서도 수술에서는 인정됨</td></tr> <tr> <td data-kind="end"></td><td>안와하</td><td>3,890</td><td>???</td></tr> <tr> <td data-kind="en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항 목		비율(원)	비 고	마취	침윤	1,120/canal	하악전치부의 침윤만 인정		이공	2,920	하악소구치에 한함		후상치조	2,930	유치에서도 수술에서는 인정됨		비구개	3,020	Endo/치주수술/외과 수술시 인정		하치조	3,800	유치에서도 수술에서는 인정됨		안와하	3,890	???						
항 목		비율(원)	비 고																																
마취	침윤	1,120/canal	하악전치부의 침윤만 인정																																
	이공	2,920	하악소구치에 한함																																
	후상치조	2,930	유치에서도 수술에서는 인정됨																																
	비구개	3,020	Endo/치주수술/외과 수술시 인정																																
	하치조	3,800	유치에서도 수술에서는 인정됨																																
	안와하	3,890	???																																

치주			
	술식	청구 상병코드	설명
치주	스케일링 (37,080원/전악)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계획된 환자의 전악 치석제거는 급여대상 치주치료에 필요한 부분 치석제거는 보험급여로 인정함 한 부분만이라도 치석제거 후의 치주치료(Rpl 이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청구 가능 (1~2개의 치아만 치석제거시는 50%만 인정)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를 재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 ①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치로 산정 ②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소정수가 50% 산정 ③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각각 소정 금액을 산정 치석제거 후 다음의 치주수술을 위해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다른 달에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내역 설명이 필요
	치면세마 (1,270원/ 1/6약당)		러버컵 등으로 연마하여 치면을 부드럽게 하는 술식 ① 영구치 산정 불가, 유치의 경우 치은염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것만 인정.

외상			
	술식	청구 상병코드	설명
외상	교합조정술 (2,770원/치아)		외상이나 TFO 및 치주질환과 관련되어 교합조정된 술식에 해당 4치아(자연치아)/1인/1일 까지 가능. 충전 또는 근관치료시에 시행되는 교두삭제나 교합조정은 청구 불가. 정출 치아의 삭제시 적용불가(정출 방지 위한 R-W spring는 잠간고정술 적용가능.)
	치아파절편 제거 (810원/치아)		Tooth fx. : 파절편제거 + 교합조정 (+ 필요시 응급근관처리 및 잠간고정술까지 청구가능) 파절편 제거와 근관치료시 = 50 : 100 (싼 치료비 1/2만 청구 가능.)
	고정술		잠간 고정술 : 동요도가 있는 치아를 고정하는 술식. (1약당 청구) 3치아 이하 - 16,220원 / 4치아 이상 - 22,530원 레진강선고정술(resin wire spling) : 비급여재료인 광중합형레진은 환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 치간고정술(interdental wiring) : 골절선이 있는 전후 치아를 wire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경우 22,600원 / 1약당 악간고정술(intermaxillary fixation,IMF) : 아치바나 와이어를 이용하여 상하악을 묶어서 고정하는 술식 38,810원
	고정장치제거		plate splint나 wire splint를 제거하는 경우
	봉합술		<구강내 열상 봉합술> 치은, 구강전정, 협부 - 2.5cm 이하(9,230원) / 2.5cm 초과(17,290원) 혀, 구강저, 구개부 - 2.5cm 이하(19,180원) / 2.5cm 초과 (24,970원) <구강외 열상 봉합술(안면 및 경부)> 1.5cm 미만 - 17,580원 / 3.0cm 이상 및 근육에 도달한 경우 - 38,610원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		치아 재식술(27700원/치아) : 외상으로 치아가 치조와에서 완전히 탈구된 경우. 의도적 재식술 : 단순발치 + 재식술 + 잠간고정술(재식술 100%,발치50%,잠간고정술50%) 근관치료는 100% 청구가능. 탈구치아정복술(11130원/치아) : 외상으로 치아가 치조와 내에서 위치가 변한 경우. 치아를 원래의 위치로 재위치 시키는 술식 근관치료와 잠간고정술은 100%청구, 교합조정은 50%청구.
	치조골 골절 정복술		비관혈적 정복술 : 치조돌기에 국한된 치조골 골절, 주로 전치부 flap 형성 없이 manual reduction 시키는 경우에 해당 관혈적 정복술 : 치조골의 복합 및 복잡 골절시 flap형성 후 시행하는 경우.